

8. 전기공사업법개정법률

법률 제5,726호 1999. 1. 29

개정이유

전기공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사업종을 통합하며, 공사지역 및 수급한도액의 제한 등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공사실명제의 도입과 이 법을 위반한 공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경쟁과 경영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전기공사업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시장이 인위적으로 분별되어 업종간의 업역분쟁과 경쟁제한의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업종구분을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매년 1회 실시하던 공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년중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업에 대한 신규진입의 제한을 폐지함(법 제4조)
- 나. 종전에는 전기공사가 진행중인 시공현장에만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공사업에 종사하는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완공후에 공사업자·공사내용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함(법 제24조).

- 다. 종전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만을 설립하고 동 협회의 가입을 강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복수의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 라. 공사업자별로 수급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전기공사는 도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종전의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사업 및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 마. 각종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함에 따른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을 한 공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 내지 제46조).

주택회보